

자율민관협의체 운영지침

[제정 2010. 5. 31]

[개정 2010. 10. 27]

[개정 2013. 1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관 제35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반부패·청렴관련 민관협력활동을 위한 자율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민관협의체”라 함은 진흥원의 반부패·청렴관련 민관협력활동을 위한 주요조직(본부, 단)에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2.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진흥원에 구성된 협의체 활동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주요조직별 협의체 활동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자율민관협의체의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수는 5인 내외로 한다.

1. 팀장 이상의 보직자
2. 민간위원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시 시민단체 및 기타 전문가단체의 민간위원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고 실질적인 반부패·청렴관련 민관협력활동을 위한 리더십이 뛰어난 자로 협의체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선출에 의해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2. 협의체의 방침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3. 재원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4. 각 주요조직별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반부패제도개선 과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27)
 -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0.10.27)

제5조(총괄부서) ① 진흥원에 구성된 협의체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두며, 총괄부서장은 대외협력TF장으로 한다.

-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진흥원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총괄관리
 - 2. 협의체의 분기별 활동실적 관리·보고
 - 3. 각 협의체별 활동실태 및 재원집행내역 점검
 - 4. 기타 진흥원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주관부서) ① 협의체별 사무 및 활동을 담당하기 위하여 주요조직별로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의 담당직원을 간사로 한다.

-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체의 회무를 담당한다.
 - 1. 협의체의 방침 및 운영계획 수립

2. 반부패·청렴관련 민관협력프로그램 개발
3. 반부패·청렴관련 민관협력활동의 방향 등의 교육 및 전파
4. 재원의 조달 및 사용계획 수립
5. 재원의 집행경비 관리
6. 기타 반부패·청렴관련 민관협력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재원 및 결과보고 등

제7조(재원) 협의체의 재원은 주요조직별 자체조달가능경비와 진흥원지원경비로 한다.

제8조(진흥원지원경비) ① 진흥원은 협의체별 반부패·청렴관련 민관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지원경비는 기관운영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며, 협의체는 필요시 총괄부서장의 협조하에 이를 사용한다.

제8조의2(수당 등)(신설 2010.10.27) ① 본 지침에 따른 협의체 위원활동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진흥원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 등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동 금액을 차감 지급한다.

제9조(보고 및 이행점검) ① 총괄부서장은 협의체의 분기별 활동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별 주관부서장은 분기 1회 협의체의 위원현황, 활동결과, 집행실적 등을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각 협의체의 활동실태와 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의 기록 및 보관) ① 간사는 협의체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은 후 의사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